

총학생회 회칙 전문

가천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회 활동을 통하여 학생권익 보호와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표로 학생자치 활동을 펼쳐 나간다. 나아가 전체 학우들을 대표하여 학우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한다.

<목차>

1 장 총칙	(1~2.p)
2 장 학생총회	(2~3.p)
3 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이하 전학대회”)	(3~4.p)
4 장 확대운영위원회	(4~5.p)
5 장 중앙운영위원회	(6.p)
6 장 총(부총)학생회장	(6~8.p)
7 장 중앙집행위원회	(8.p)
8 장 단과대학 학생회	(8~9.p)
9 장 중앙동아리운영위원회.....	(10.p)
10 장 언론출판협의회	(10~12.p)
11 장 재정	(11~12.p)
12 장 선거	(12~13.p)
13 장 회칙개정	(14.p)
14 장 비상대책위원회	(14~15.p)
15 장 홍보 게시물 관리 규정	(15~16.p)

1 장 총칙

1 조(명칭) 본회는 가천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분회”)라 칭한다.

2 조(목적) 가천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회 활동을 통하여 학생권익 보호와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표로 학생자치 활동을 펼쳐 나간다. 나아가 전체 학우들을 대표하여 학우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한다.

3 조(설치) 본회는 가천대학교 안에 둔다.

4 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가천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한다. 단,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5 조(회원관리)

-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지니며 임원이 될 수 있다.
- 2) 본회의 회원은 제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원 중 선거직 임원이 회칙을 위반했을 시 탄핵권을 지닌다.
-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와 회원에 부당한 침해가 있을 시 이에 대응할 권리를 지닌다.

6 조(회원의 임무)

- 1) 본회의 회원은 대학자치와 본회 및 회원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7 조(구성) 본회의 구성은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비상시),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총(부)학생회장, 중앙집행위원회, 단과대학 학생회, 언론출판협의회 등으로 구성한다. (2023.03.23. 개정)

8 조(의결) 본회의 의사결정권은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순서로 한다. (2021.7.30. 항 개정)

2 장 학생총회

9 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관한 최고의결권을 갖는다.

10 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11 조(권한)

- 1) 학생총회는 예·결산 심의결과를 보고받는다.
- 2) 학생총회는 본회 및 회원전체에게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토의, 의결한다.
- 3) 학생총회는 총(부)학생회장 탄핵결정권을 갖는다.

12 조(의장)

- 1)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 2) 의장 궐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차석으로 한다.
- 3)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발의가 있거나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자가 학생총회를 진행한다.
(2021.7.30. 항 개정)

※ 용어해설

- ① 궐위(闕位): 사망, 탄핵 결정에 의한 파면, 피선거격의 상실, 사임 등으로 재위(在位)하지 않게 된 경우를 의미함.
- ② 사고(事故): 재위(在位)하지만 신병(身病), 해외여행 또는 탄핵소추의 결정으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
- ③ 본 회칙에서 사고(事故)라 함은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시국에 관련한 법칙 조치로 인해 구속되어 수감 중인 경우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본회 업무 외의 직무를 수반하여 현실적으로 본회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조(소집)

1) 학생총회는 의장, 중앙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 확대운영위원회 1/3 이상, 회원 1,000 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은 그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7 일 이내에 이를 반드시 소집하여야한다. (2022.8.18. 항 개정)

14 조(의결)

- 1) 학생총회는 회원의 1/10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야간강좌에 산업체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직장인의 경우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본 안건에 한하여 의결을 할 수 있다.
- 2) 총(부)학생회장의 불신임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 중 1 인이 임시의장이 되며 회원 1/10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총회의 안건은 의장, 중앙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상정한다.
- 4) 회원 500 인 이상의 연서로 올라온 안건은 의장, 중앙운영위원에서 안건 상정을 검토해야 하며, 연서에 의한 안건은 학생총회 5 일 전에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 5) 회원은 학생총회의 결정사안에 대해 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3 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이하 전학대회”)

15 조(지위)

1)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불성사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16 조(구성)

- 1)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언론출판협의회 의장, 언론출판협의회 부의장, 각 단과대 학생회장, 각 단과대 부학생회장, 각 과 학생회장, 각 과 부학생회장, 각 과 학년대표, 중앙동아리 회장으로 구성한다. (2021.7.30. 항 개정)
- 2) 전체적인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총학생회 집행간부 중 1 인이 학운위의 대의원이 된다.
- 3) 재적대의원 중 아직 선거를 치르지 못했거나 기타 사유로 궐위나 사고시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17 조(의장)

- 1) 의장은 전학대회의 운영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전학대회를 대표한다.
- 2)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 3) 의장 궐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차석으로 한다.
- 4)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발의가 있거나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자가 전학대회를 진행한다. (2022.8.18. 항 개정)

18 조(소집)

- 1) 전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2) 전학대회는 의장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과반수 또는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의장은 그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이후 2 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9 조(업무 및 권한)

-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2) 총회 무산 시 총회의 지위를 위임받아 심의한다.
- 3)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0 조(개의 및 의결)

- 1) 전학대회는 재적대의원 1/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 2) 전학대회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 조(안건 상정 및 채택)

- 1) 안건은 중앙운영위원회와 학운위 대의원 1/20 이상의 연서로 상정할 수 있다.
- 2) 재적대의원 1/2 이상의 동의로 채택할 수 있다.

4 장 확대운영위원회

22 조(지위)

- 1)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는 원활한 자치 활동을 위한 상설기구이다.
- 2) 전학대회 불성사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 3) 학운위는 총학생회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의견개진과 학기별 사업계획의 이해를 높이며 심의·의결한다.

23 조(구성)

- 1) 학운위의 대의원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언론출판협의회 의장, 언론출판협의회 부의장, 각 단과대 학생회장, 각 단과대 부학생회장, 각 과 학생회장, 각 과 부학생회장, 으로 구성한다. 단, 각 과 부학생회장은 의결권을 제외한 발언권만을 가진다. (2020.9.24. 항 개정)
- 2) 전체 정원이 500 인 이상인 과의 경우 예외적으로 1 인의 의결권을 추가로 부여한다. (2021.7.30. 항 개정)
- 3) 전체적인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총학생회 각 부서별 집행간부 중 1 인이 학운위의 대의원이 되며 의결권을 제외한 발언권만을 가진다. (2019.8.13. 항 개정)
- 4) 재적대의원 중 아직 선거를 치르지 못했거나 기타 사유로 궐위나 사고시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24 조(의장)

- 1) 의장은 학운위의 운영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학운위를 대표한다.
- 2)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 3) 의장 궐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차석으로 한다.
- 4)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발의가 있거나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자가 학운위를 진행한다. (2021.7.30. 항 개정)

25 조(소집)

- 1) 확운위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해서 두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여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9.8.13. 항 개정)
- 2) 정기회의는 매 학기 개강 전후 4 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2022.8.18 . 항 개정)
- 3) 임시회의는 의장 및 중앙운영위원의 과반수 또는 확운위 대의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의장은 그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이후 2 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26 조(업무 및 권한)

- 1)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심의·의결
- 2) 학생총회 소집의결
- 3) 본회 사업계획 심의·의결
- 4) 총학생회 예산, 결산 심의·의결
- 5) 특별기구 설치 의결 및 특별기구장 선출 인준
- 6) 회원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하는 사항
- 7)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
- 8)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한 학칙개정안에 대한 발의
- 9) 중앙운영위원회, 각 자치기구에 필요한 의견 제출
- 10)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탄핵 발의 및 중앙집행위원과 특별기구장 탄핵소추 및 의결권
- 11) 기타 본회의 및 회원 전체에 중대한 사항 심의·의결

27 조(개의 및 의결)

- 1) 확운위는 재적대의원 1/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 2) 확운위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각 과 학생회장이 궐위, 사망 혹은 부재일 경우 부학생회장이 대신하여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전체 정원이 500 인 이상인 과 학생회가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부학생회장이 2 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2019.8.13. 항 개정)

28 조(탄핵 및 의결권)

- 1) 확운위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및 각 자치기구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회의 업무 수행 중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탄핵을 요구할 수 있다.
- 2) 탄핵 요구권은 재적대의원 50 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재적대의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2/3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권을 의결한다. (2021.7.30. 항 개정)

29 조(안건 상정 및 채택)

- 1) 안건은 중앙운영위원회가 개회 3 일전까지 상정한다.
- 2)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동의 또는 300 인 이상의 연서명으로 회칙개정을 제외한 안건을 개회 전 상정할 수 있다.

5 장 중앙운영위원회

30 조(지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본회의 최고 상설 운영기구이다.

31 조(구성)

1) 중운위는 본회의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중앙집행위원, 각 단과대 학생회장, 각 단과대 부학생회장, 언론출판협의회 의장, 언론출판협의회 부의장, 가천리버럴아츠컬리지 학생회장, 가천리버럴아츠컬리지 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각 단과대 부학생회장, 중앙집행위원, 언론출판협의회 의장, 언론출판협의회 부의장, 가천리버럴아츠컬리지 학생회장, 가천리버럴아츠컬리지 부학생회장은 보고권과 발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2022.8.18. 항 개정)

2) 각 단과대 학생회장, 부재 시 각 단과대 부학생회장이 의결권을 위임받는다. (2023.3.23. 항 개정)

32 조(의장)

1) 총학생회장이 당연직 의장으로 중앙운영위원회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의장 사고시 부총학생회장이 차석으로 한다.

33 조(업무 및 권한)

1) 학생회의 제반 사업을 심의 조정한다.

2) 학생회의 전체 예산을 심의 조정하여 확운위에 제출한다.

3) 확운위 및 학생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학생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5) 특별기구의 설치 요구안을 의결하여 확운위에 상정한다.

6) 기타 확운위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34 조(소집) 중운위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행한다.

1) 정기회의는 당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그 시기를 정한다.

2) 임시회의는 긴급을 요할 경우 총학생회장이나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35 조(개의 및 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장 총(부총)학생회장

36 조(총학생회장의 지위)

1)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총학생회장은 중운위, 전학대회 및 학생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3)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모든 대외적인 업무에서 본회를 대표한다.

37 조(부총학생회장의 지위)

- 1)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 2) 총학생회장의 궐위나 사고시에는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 3) 부총학생회장도 궐위나 사고시에는 중운위에서 중앙운영위원 중 1 인을 선출하여 중운위 임시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운위 대의원 2/3 이상의 연서를 통해 총학생회장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만약, 총(부총)학생회장이 임기 내에 다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경우 임시 대표자 체계나 직무대행 체계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본래의 직무와 권한으로 전환된다.)

38 조(임기) 총(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1 월 1 일에서 당해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단, 당선 후 3 주일 후부터 이월 받을 수 있으며 다음 학년도 학생회 선거 후 3 주일 후에 이월할 수 있다. (단, 여기서 “이월”이라 함은 ‘권한과 직무’를 포함한다.)

39 조(선출)

- 1) 총(부총)학생회장은 2 인 1 조로 공동 입후보한다.
- 2) 총(부총)학생회장의 피선거 자격은 본회의 회원 중에서 5 학기 이상 등록한 자 중 학칙에 반하지 않는 자로 한다. (2022.8.18. 항 개정)

< 가천대학교 학칙 > 中

제 18 장 학생활동

제 81 조(총학생회)

③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간부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9.22.,2016.05.24.)

1.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5(C+)이상인 자
2. 총(부)학생회장은 5 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3 학년(건축학과 4 학년) 재학생으로서 수업 년한에 따른 잔여 학기가 2 개 학기 이상인 자이며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잔여학기에 해당학기를 포함한다. 다만 메디컬캠퍼스는 3 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2 학년 이상인 자. (2019.8.13. 항 개정)
3.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4 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재학생으로서 잔여 학기가 2 개 학기 이상인 자
4.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간부 임기는 등록을 마친 본교 재학생으로 잔여학기가 2 개 학기 이상인 자
5. 재학기간 중 유기정학 이상의 학사징계 또는 형사처벌(금고, 집행유예, 실형 등) 등을 받지 아니한 자
6.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 조직,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총학생회회칙 및 단과대학 학생회 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 3) 총(부총)학생회장은 회원 전체의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4) 당선자는 경선일 경우 총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하며, 단선일 경우 총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 5) 기타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의한다.

40 조(신분보장) 총(부총)학생회장은 불신임의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으며 신분은 보장한다.

41 조(업무 및 권한)

- 1) 집행위원, 집행국장의 임명 및 해임권
- 2) 중운위, 학운위, 전학대회, 학생총회의 의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한다.
- 3) 중운위, 학운위, 전학대회,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22.8.18. 항 개정)
- 4) 본회 회원의 중의를 대표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학교행정에 대하여 학교 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5) 그 밖의 총(부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주요사안을 집행한다.

7 장 중앙집행위원회

42 조(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집행기구이다. (2021.7.30. 항 개정)

43 조(구성) 중앙집행위원회는 총(부총)학생회장과 집행부서의 장으로 구성된다. (2021.7.30. 항 개정)

44 조(업무 및 권한)

- 1) 중앙집행위원회는 학생총회, 전학대회, 학운위, 중운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 2) 사업계획, 예산안을 수립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8 장 단과대학 학생회

45 조(설치) 각 단과대학에 학생회를 둔다.

46 조(지위) 단과대학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의 최고 학생기구이다.

47 조(구성) 단과대학 학생회는 각 과(학부)학생회 및 단대 운영위원회 그리고 당해 해당 단과대학의 학생 전체로 구성한다. 단, 단과대학 학생회 및 과(학부)학생회에 대하여 선거가 무산될 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단과대학 학생회 및 과(학부) 학생회에 준하는 업무권한을 지닌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은 각 단과대학의 회칙을 따른다. (단과대학 회칙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14 장 비상대책위원회에 의거한다.) (2021.7.30. 항 개정)

48 조(회장)

- 1)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각 단대 회원 전체의 직접, 비밀, 평등,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피선거 자격은 각 단과대의 자체 회칙에 따른다.
- 2)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당해 해당 단과대학을 대표하며 본회의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49 조(업무 및 권한) 각 단과대학 학생활동을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50 조(회칙)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총학생회의 총학생회칙에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과 조직을 갖는다. (단, 총학생회칙과 상반될 경우 총학생회칙이 우선된다.)

51 조(결산보고)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예산의 투명성을 지향하고 올바른 예산의 사용을 위해 예산의 결산을 표준규격 A1의 크기로, 영수증 세부내역을 A4의 크기로 1개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장소를 공지하여야 한다. (단, 결산보고의 양식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으로 통일하여 작성하고 보고한다.) (2022.8.18. 개정)

- 1) 결산보고는 매 학기별로 하여야 한다. (일시는 하·동계 방학 시작 3주전부터 2주간으로 한다.)
- 2) 결산보고는 단대운영위원의 승인을 얻은 후 공고하여야 한다. (단대운영위원의 1/2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단과대학 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언제든지 공개하여야 한다.
- 4) 결산보고에는 정확한 품목과 금액의 수입·수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022.8.18. 항 개정)
- 5) 이를 어길 시 단운영위원의 1/2, 단과대학 회원의 1/2 이상의 의결로 탄핵권이 발동된다. (개정 2008. 08. 25)

52 조(학과 학생회비) 학생회비에 대한 규정은 학생회비를 납부한자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학과 학생회비에 대한 수납은 학과 자체적으로 하되 매년 같은 비율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2) 학과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에 대하여 단대 회칙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차등적 수납 및 환불규정을 적용한다. (2021.7.30. 항 개정)

시 기		환불 규정
1 학년	이수 후	학생회비의 30% 수납 및 환불
2 학년	이수 후	학생회비의 20% 수납 및 환불
3 학년	1 학기 이수 후	학생회비의 10% 수납 및 환불

- (단, 환불은 전에 있던 학과 기준으로, 수납은 전과 하는 학과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 3) 학과 학생회비에 대한 환불은 납부한 학생에게 직접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2.5.)
 - 4) 편입생에 대한 학생회비 수납, 환불 규정은 단대 회칙으로 위임한다.
 - 5) 시기에 상관없이 자퇴생에 대한 환불 규정은 단대 회칙으로 위임한다. (개정 2011. 4. 25)

53 조(학과 학생회비 결산보고) 각 학과 학생회는 예산의 투명성을 지향하고 올바른 예산의 사용을 위해 예산의 결산을 표준규격 A1의 크기로, 영수증 세부내역을 A4의 크기로 1개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장소를 공지하여야 한다. (단, 결산보고의 양식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으로 통일하여 작성하고 보고한다.) (2022.8.18 개정)

- 1) 결산보고는 매 학기별로 하여야 한다. (단, 일시는 하·동계 방학 시작 2주전부터 2주간으로 한다.) (2022.8.18. 항 개정)
- 2) 학과 학생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결산내용을 언제든지 공개해야 한다.
- 3) 결산보고에는 정확한 품목과 금액의 수·입수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022.8.18 항 개정)
- 4) 이를 어길 시 학과 학생 1/2 이상의 의결로 탄핵권이 발동된다. (개정 2011. 04. 25)

9 장 중앙동아리운영위원회

54 조(지위) 중앙동아리운영위원회(이하 "중동위")는 중앙동아리 최고 운영기구이다.

55 조(목적)

- 1) 중동위는 올바른 대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동아리 인의 자치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2) 중동위는 동아리 인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동아리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56 조(구성)

- 1) 중동위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중앙집행위원, 각 중앙동아리 회장으로 구성한다.
- 2) 중앙동아리 회장 부재 시 부회장이 재적대의원이 된다.(2023.3.23. 항 개정)

57 조(의장)

- 1)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 2) 의장 궐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차석으로 한다.
- 3)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발의가 있거나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에는 중동위에서 선출된 자가 중동위를 진행한다.

58 조(소집)

정기회의는 학기당 2 회 이상 당해 중동위에서 그 시기를 정한다. (2023.3.23. 항 개정)

- 1) 임시회의는 긴급을 요할 경우 의장이나 중동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59 조 (업무 및 권한)

- 1) 동아리 취소에 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진다.
- 2) 동아리 제명, 징계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진다.

60 조(개의 및 의결)

- 1) 중동위는 재적대의원 1/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 2) 중동위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동아리 회장 부재 시 부회장이 의결권을 위임받는다. (2023.3.23. 항 개정)

61 조(회칙)

- 1) 중앙동아리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동아리운영세칙을 따른다.

10 장 언론출판협의회

60 조(지위) 언론출판협의회는 학내의 언론, 출판활동에 관련된 모든 기구의 민주적 자치를 위한 최고 대표기구이다.

61 조(목적) 언론출판협의회는 언론출판인들의 조직적인 혁신을 가져오고 학내언론, 출판 주체들이 정치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한 최고의 대중적 언론, 출판 체계의 강화를 통해 단일한 대중선전, 선동조직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62 조(의장)

- 1) 언론출판협의회 의장은 언론출판협의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중앙운영위원이 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 2) 언론출판협의회 의장의 선출은 언론출판협의회 회칙에 따른다.

63 조(업무 및 권한)

- 1) 학내의 모든 언론, 출판 활동에 관한 조직적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 2) 학생의 자율적 언론, 출판 활동에 대해 권익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 3)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회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회칙과 조직을 갖는다.

64 조(결산보고) 언론출판협의회는 예산의 투명성을 지향하고 올바른 예산의 사용을 위해 예산의 결산을 표준규격 A1의 크기로, 영수증 세부내역을 A4의 크기로 1개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장소를 공지하여야 한다. (단, 결산보고의 양식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으로 통일하여 작성하고 보고한다.) (2022.8.18. 개정)

- 1) 결산보고는 매 학기별로 하여야 한다. (일시는 하·동계 방학 시작 2주전부터 2주간으로 한다.) (2022.8.18. 항 개정)
- 2) 결산보고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고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회의 1/2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22.8.18. 항 개정)
- 3) 회원의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언제든지 공개하여야 한다.
- 4) 결산보고에는 정확한 품목과 금액의 수입·수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022.8.18. 항 개정)
- 5) 이를 어길 시 국장의 1/2, 언론출판협의회원의 1/2 이상의 의결로 탄핵권이 발동된다. (개정 2008. 08. 25)

11 장 재정

65 조(회비 및 관리)

- 1) 본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제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 2) 회비는 학교에 징수를 위임한다.
- 3) 회비의 환불 가능 기간은 해당 납부 기준 차수의 마감일로부터 2주간으로 지정한다. 현장납부의 경우 납부 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시점으로부터 2주간으로 지정한다. (2019.8.13. 항 개정)

66 조(분배)

- 1) 총학생회는 전체 학생회비의 43%를 집행한다. (2022.8.18. 항 개정)
- 2) 단과대학 학생회는 전체 학생회비의 55%를 집행한다. (2021.7.30. 항 개정)
- 3) 언론출판협의회는 전체 학생회비의 1%를 집행한다.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학생회비의 1%를 집행한다.
(단, 여기서 분배는 징수된 학생회비 내에서 행하며, 단과대학 학생회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단과대학 내 학과 학생회가 집행한다.) (2021.7.30. 항 개정)

67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1 월 1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68 조(예산편성 및 심의) 예산은 확운위에서 사후 승인받는다.

69 조(지출) 확운위에서 승인된 예산은 본회의 해당기구의 필요시 총학생회장이 지출한다.

70 조(예산집행) 예산을 집행할 시는 일체의 경비에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각 기구는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경비 일체를 기재하여야 한다.

71 조(결산보고) 총학생회는 예산의 투명성을 지향하고 올바른 예산의 사용을 위해 예산의 결산을 표준규격 A1 의 크기로, 영수증 세부내역을 A4 의 크기로 1 개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장소를 공지하여야 한다. (단, 결산보고의 양식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으로 통일하여 작성하고 보고한다.)

1) 결산보고는 매 학기별로 하여야 한다. (일시는 하·동계 방학 시작 2 주전부터 2 주간으로 한다.)

2) 결산보고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고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회의 1/2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언제든지 공개하여야 한다.

4) 결산보고에는 정확한 품목과 금액의 수입·수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5) 이를 어길 시 중운위원의 1/2, 회원의 1/2 이상의 의결로 탄핵권이 발동된다.

(2022.8.18 개정)

12 장 선거

72 조(선거시기) 총(부총)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선거는 임기 만료 30 일 전에 실시한다.

73 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치루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각 단대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2 인으로 구성한다. 중선관위장은 중선관위 과반수의 동의로 중선관위 중 1 인을 선출한다.

3) 단과대학 선관위는 단과대학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4) 중선관위는 선거세부시행세칙을 결정하여 본 세칙에 위배되는 각종 사안을 심의·의결하며 입후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

6) 선거일 공고는 선거일 30 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74 조(자격) 총(부총)학생회장은 5 학기 이상, 단과대 학생회장은 4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제한한다. (2022.8.18 개정)

75 조(선거방법)

1) 본회의 선거는 직접, 비밀, 평등, 보통선거로 한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한다.

76 조(재선거)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재선거는 선거에서 당선 무효확정 판결이 내려지거나, 당선인이 임기 재시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 1) 선거가 무효로 결정되었을 때
- 2)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 사망 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었을 때
- 3) 자세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한다.
- 4) 재선거가 실시될 시, 익년도 개강 후 6 주 이내에 재선거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3.08.16 개정)

77 조(보궐선거) (보궐선거는 선거에서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 되었을 경우를 의미한다.)

- 1) 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불신임 의결될 경우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승계한다.
- 2)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모두 궐위되거나 불신임 의결될 경우 재·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3)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유고 시 이전 재임기간이 3 개월 이하이고 이후 잔여 임기의 1/2 이상의 유고가 확정된 경우, 유고일 또는 유고 확정일로부터 50 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023.08.16 개정)

78 조(중앙재선거관리위원회) (2023.08.16 개정)

- 1) 중앙재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재선관위”)는 재·보궐선거 진행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 2) 중재선관위는 당해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단과대학 학생회장(비상대책위원장) 궐위 시 부학생회장(비상대책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3) 중재선관위는 중선관위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집행한다.
- 4) 중재선관위는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각 1 인씩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단과대학 학생회장(비상대책위원장) 궐위 시 부학생회장(비상대책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학생회 재·보궐선거 시 단과대학 학생회장(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단대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1 인으로 구성한다.
- 5)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궐위 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6) 단과대학 재선거관리위원회는 중재선관위의 산하로 운영한다.
- 7) 당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중재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다.
- 8) 중재선관위는 중선관위의 선거세부시행세칙을 따라, 본 세칙에 위배되는 각종 사안을 심의·의결하며 입후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
- 9) 중재선관위는 위원과 위원장의 휴직을 요하지 않는다. 단, 총학생회의 재·보궐선거로 인한 중재선관위의 구성 시 휴직을 요한다.
- 10) 선거일 공고는 14 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79 조(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한다.

13 장 회칙개정

80 조(발의) 회칙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학운위 대의원의 1/3 이상의 발의
- 2) 중운위 2/3 이상의 발의
- 3) 본회 회원의 1/1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81 조(의결공포) 발의 시 총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 3일 이후 30일 이내에 전학대회 및 학운위 대의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된 회칙은 총학생회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한다.

82 조(효력) 이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첨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행세칙

14 장 비상대책위원회

83 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의 궐위 기간동안 총학생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84 조(권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에 준하는 업무권한을 갖는다.

85 조(의무)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

86 조(임기)

- 1)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1월 1일에서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로 한다.
- 2) 재·보궐선거가 무산될 시 비상대책위원회(부)위원장의 의사를 고려 후, 중운위의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경우 임기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3)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될 경우 다시 한 번 당해 연도 중운위에서 비상대책(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임기는 선출 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4) 이 또한 무산될 시 현 중앙운영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겸직하고 그중 대표자 1명을 선출한다.

87 조(선출)

- 1) 비상대책(부)위원장의 선출은 당해 연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와 다음 연도 중운위가 함께 통합중운위 회의를 진행하여 어느 연도의 중운위에서 비상대책(부)위원장을 선출할지에 대해 모든 상황을 고려한 후 결정한다.
- 2) 당해 연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비상대책(부)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잔여 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로 선출한다.
- 3) 비상대책(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부위원장을 따로 선출하며, 참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경선일 경우, 당선자는 총 의결권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
- 4) 재·보궐 선거가 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될 경우 다시 한 번 비상대책(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때,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부위원장은 따로 선출하며, 중운위 회원의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경선일 경우, 당선자는 총 의결 권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

88 조(통합중앙운영위원회)

- 1) 통합중운위의 회원은 당해 연도 중운위와 다음 연도 중운위로 구성되며 동일하게 의결권이 주어진다. 또한 다음 연도 중운위는 통합중운위에 한하여 임기기간이 아니더라도 의결권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 2) 통합중운위의 회원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각 단과대 학생회장, 각 단과대 부학생회장, 언론출판협회의장, 언론출판협회의 부의장, 가천리버럴아츠컬리지 학생회장, 가천리버럴아츠컬리지 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각 단과대 부학생회장, 총학생회 각 집행위원, 언론출판협회의 의장, 언론출판협회의 부의장, 가천리버럴아츠컬리지 학생회장, 가천리버럴아츠컬리지 부학생회장은 보고권과 발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2020.9.24. 항 개정)
- 3) 각 단과대 학생회장, 부재 시 각 단과대 부학생회장이 의결권을 위임받는다. (2020.9.24. 항 개정)
- 4) 통합중운위 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의장 궐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차석으로 한다.
- 5) 통합중운위는 선거가 무산된 날로부터 10 일 내에 실시해야 하며, 회원의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89 조(구성)

- 1) 비상대책위원회는 총(부)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거나 기존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될 경우 구성된다.
- 2)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부)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들로 구성한다.
- 3) 총(부)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될 때부터 다음 해 1 월 1 일 전까지 구성한다.
- 4) 비상대책(부)위원장이 선출되면 그 즉시 3 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한다.
- 5) 공고문을 게시할 시 모집 인원을 명시한다. 단, 모집 인원 에 대한 수는 비상대책(부)위원장이 결정한다.
- 6) 비상대책위원은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구성한다.
 - ① 모집 인원 미달 시 비상대책(부)위원장이 자체적으로 구성한다.
 - ② 면접을 통한 인원 구성 후 인원 미달 시 (부)위원장이 자체적으로 구성한다. 7)비상대책위원은 잔여 학기가 1 개 학기 이상인 자로 선출한다.
- 8) 재·보궐 선거가 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체되어 다시 한 번 비상대책(부)위원장이 선출될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비상대책위원을 새롭게 구성한다. (2019.8.13. 항 개정)

15 장 홍보 게시물 관리 규정

90 조(범위) 본 규정에 대한 범위는 총학생회로 제한한다.

91 조(목적) 총학생회 회칙 내 광고 및 홍보물의 게시 기준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본교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에게 유익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92 조(관리자)

- 1) 실내 학과사무실,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회 등 특정 기관 소유의 게시판의 경우 해당 기관을 관리자로 인정한다.
- 2) 외부 입간판, 교외 게시판, 소유 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교내 게시판은 총학생회를 관리자로 인정한다.
- 3) 총학생회 제작의 게시물은 관리자의 사전 승인 없이 '총학생회 부착 승인' 날인에 의해 부착 가능하다.

93 조(홍보 게시물 게시 승인)

- 1) 교내에 홍보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홍보 게시물의 내용, 재질 규격 등이 면학 분위기나 환경미화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자는 승인을 할 수 있다.
- 3) 외부기관이 학교 내에 홍보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
- 4) 게시판 관리자가 홍보 게시물 부착을 승인할 때에는 "부착 승인"인을 홍보 게시물에 날인하여야 한다.
- 5) 아래 경우 게시물 승인을 불허할 수 있으며, 무단 부착 시 철거할 수 있다.
 - ① 욕설이 포함되어 있거나 모욕감을 유발하는 경우
 - ② 시각적인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 ③ 음란물이거나 성적 묘사가 포함된 경우
 - ④ 아무런 정보도 전달하지 않거나 알아보기 힘든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 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⑥ 사행성 광고인 경우
 - ⑦ 교내 구성원의 직접적인 영리 추구의 경우
 - ⑧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의결 하에 미관 및 미풍양속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94 조(홍보 게시물 부착 및 범위)

- 1) 본교 내에 홍보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 실내 및 실외 게시판에 한하여 부착하며 관리자의 임의 하에 지정된 벽면 부착을 허용한다.
 - ① 본교, 본교 학생회(총학생회, 단과대학, 학과), 동아리, 자치 기구에서 주최하는 행사, 그 외 기타 본교에서 인정하는 행사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게시물
 - ③ 본교 구성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물
 - ④ 안전 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 등에 사용되는 게시물
 - ⑤ 본교 학생에게 공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 경우
 - ⑥ 본교 기관과 제휴된 상업성 광고의 승인된 게시물
 - ⑦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은 광고 및 홍보물

95 조(부착도구) 게시물은 투명색 테이프, 자석 등 옥외 및 옥내 부착 장소에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착재를 이용할 수 있다. 색상 테이프, 스프레이 등 교내 시설 및 건물 훼손, 미관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물품 사용을 금한다.

96 조(게시기간 및 철거) 무단 게시물이나 행사 기간이 경과한 게시물에 한해서는 관리부서에서 임의 철거할 수 있다.

97 조(보호 및 책임)

- 1)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게시한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학칙 및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 2) 이 규정을 위반한 홍보물은 각 건물에 속해 있는 관리자의 책임 하에 지체 없이 회수 또는 철거한다.
- 3) 각 게시판 및 홍보물 게시 가능 장소는 총학생회, 부착 구역별 해당 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회, 관련 부서에서 관리한다. (2019.8.13. 항 개정)